LAW Common Sense Information

약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송달능력이 없다.

글/ 박종복 변호사

Q **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을 둔 맞벌이 부부다.**
몇달전 토요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와서 관련소송서류에 아들의 서명을 받아 갔었다고 한다. 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의신청을 내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. 향후 전망은?

A 이 사건의 쟁점은 귀하의 나이어린 아들에게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.

만약 귀하의 아들에게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송달능력이 있다면 귀하가 피고로 되어 있을 위 이행권고결정문은 귀하에게 적법하게 송달이 된 것이 되고 귀하가 그 이의신청기간(14일)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결국 위 이행권고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되어 귀하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되나, 반대로 귀하의 아들에게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송달능력이 없다면 귀하는 적법한 송달을 받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귀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정식재판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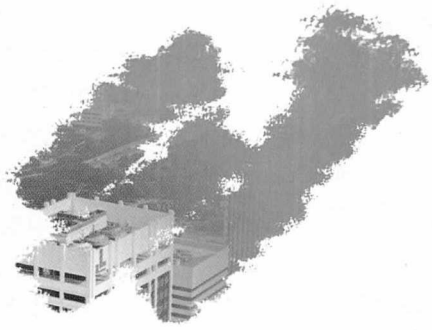

최근 대법원은 송달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약 8세 3개월된 남자어린이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된 경우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그 어린이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어린이의 수송달능력을 부정하였다.
{대법원 2005. 12. 5 선고 2005 마 1039 결정 공 2006. 2. 15(244) 215}

결국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귀하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귀하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.